

변경대비표

[투자설명서]

-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NH-Amundi 글로벌 웰스&헬스 증권자투자신탁(H)[주식]
- 2. 효력발생일 : 2026 년 10 월 30 일
- 3. 정정사유 :
 -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이능규 → 정승호)
- 4. 정정내역

구분	변경전	변경후
<요약정보> 운용전문인력	책임운용전문인력: 이능규	책임운용전문인력: 정승호
제2부. 2. 집합투자 기구의 연혁	-	효력발생일 기준으로 갱신
제2부. 5. 운용전문 인력	책임운용전문인력: 이능규	책임운용전문인력: 정승호
제2부. 14. 이익 배 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15.4%(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최고 한도 소득세율 38%, 주민세 3.8%)로 종합과세 됩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15.4%(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u>개인소득세율로</u> 종합과세 됩니다.

변경대비표

[간이투자설명서]

-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NH-Amundi 글로벌 웰스&헬스 증권자투자신탁(H)[주식]
- 2. 효력발생일 : 2026 년 10 월 30 일
- 3. 정정사유 :
 -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이능규 → 정승호)
- 4. 정정내역

구분	변경전	변경후
<요약정보> 운용전문인력	책임운용전문인력: 이능규	책임운용전문인력: 정승호